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 
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정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 
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 (1명)  
찬 성 자 : 이상훈, 이승미, 권순선,  
전병주, 박순규, 여 명,  
이성배, 신정호, 김소영,  
전석기, 김경우, 오현정,  
이영실, 이병도, 문장길,  
노승재, 이태성, 홍성룡,  
김화숙, 문병훈, 송아량,  
이은주 의원 (22명)

1. 제안이유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로, 공연장 등에서 이들을 위한 좌석 모두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”을 “장애인 등의 관람석”  
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최적관람석의 설치)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<u>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최적관람석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장애인 등의 관람석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